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7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임이자·권명호·송언석

추경호 · 김영식 · 한무경

이명수・金炳旭・김성원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 년부터 신규성·우수성이 높은 환경 기술을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타 신기술인 건설신기술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7항 신설, 제7조의3제1항 등).

법률 제 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

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
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
	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
	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
	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기술
	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
	<u>니한다.</u>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의 유효기간) ① 신기술인증과	의 유효기간) ①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	
부터 <u>5년</u> 으로 한다.	<u>8년</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